22. 학생인권보호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 **인권침해의 유형**

침해 유형	세부 침해 형태
인격권 침해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등
학습권 침해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장비나 네트워크 차단, 학사상 권한 남용, 자퇴 강요 등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근로권 침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요구,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기타	위의 침해와 다르나,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차별행위란?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3)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①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성적인 언동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 성폭력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공연음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미수,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16세 미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미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미수

-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 :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 /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

나. 상담안내

1) 이용 대상: 교수, 학생, 직원 등 전남대 구성원이라면 누구

2) 상담 및 신고처

- 광주캠퍼스: 제1학생회관 2층 인권센터 ☎ (062) 530-5911~5912
- 여수캠퍼스: 학생회관 2층 208호 ☎ (061) 659-6236
- 홈페이지: http://hrc.jnu.ac.kr

※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고 가능

3) 상담시간: 월-금 9:00~18:00

다. 인권센터 교육 안내

1)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전 구성원은 매 년, 분야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

2) 폭력예방교육 참여 방법

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PC)

-「전남대학교 포털 로그인」→「교육훈련」→「폭력예방교육」→「온라인교육 강의실 」

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스마트폰)

-「전남대스토어 접속 →「폭력예방교육」

라. 연락 및 문의처

전화: (062) 530–5911~12

홈페이지: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http://hrc.jnu.ac.kr